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3.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17호로 2023년 3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나.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이태원 사고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22.10.30.

3. 주요내용

가. 감면 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나. 감면 내용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구세)를 면제한다.

다. 기 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4. 관계법령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했던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감면

대상자로 하되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에게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 직권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하고 있음.

※ (2022년 부과기준) 감면 추정금액: 462,970원 (2건)

○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라고 명시함.

한편,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참사로 인해 고통 받는 유가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재산세 감면을 통해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의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조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2023. 3. 14.>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

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